

[사법농단 ISSUE PAPER 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5. (목)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목차>**

### **1. 사안의 개요**

###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 **3. 사법농단의 실태**

### **4. 평가**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 재판거래 의혹

### 1. 사안의 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위반의 점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와대는 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의 점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3년 실형), 대법원(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죄(4년 실형), 상고기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1심부터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 가. 그간의 경과

2017. 3. 24.부터 2017. 4. 18.까지 26일간 행해진 사법부 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이슈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어서 2017. 11. 20.부터 2018. 1. 22. 사이에 행해진 사법부 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는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 하에 하나의 문건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문건(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

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1))은 3차 조사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위 문건을 작성한 정OO 심의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문건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문건을 제외하고, 원세훈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 또는 공개되었다. 이 문건들은 사법행정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명백한 정황을 다수 담고 있다.

##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 ◆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진행상황 [64]

위 문건은 2014. 1. 27. 경(2014. 1. 27. 공판준비기일 전) 박OO 심의관(당시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 현 서울고법 판사)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박OO 심의관은 위 문건을 기초실장의 요청에 따라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의 작성 행위를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원세훈(전 국정원장)사건 개요 [61]

위 문건은 2014. 8. 23. (2014. 9. 11. 선고기일을 앞두고) 박OO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는 김용관 사건 담당부. 김용관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

---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죄 선고한 바 있음.” 부분과 같이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과거 담당 사건과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 [56]

위 문건은 2014. 9. 12. (1심 판결 선고 직후) 박OO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차장과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된 것이다.

◆ 원세훈 사건 1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 [57]

위 문건 역시 2014. 9. 18. 박OO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차장,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위 56번 문건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위 문건은 2015. 2. 8. (2015. 2. 9.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정OO 심의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이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항소기각과 인용에 따른 대응시나리오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문제 되는 문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362] ·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요약) [29]

위 문건들은 2015. 2. 9. 오후 4시경(항소심 선고 직후) 박OO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박OO 심의관은 구체적 지시 없이 현안보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했다.

문건 자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작성이 되어 있으나,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 연구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의 논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건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위 문건은 2015. 2. 10. 정OO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다. 정OO 심의관은 추가 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그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정OO 심의관은 임종현 기조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임종현 기조실장은 “무죄를 예측하고 있어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향소심 선고와 관련된 동향 파악이 정리되어 있어, 가장 문제되는 문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 425지는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 [67]

2015. 7. 23. 신OO 연구관(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현 평택지원 부장판사)이 작성한 것으로 해당 파일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법리가 정리되어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66]

2015. 7. 23.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

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88호) 심리방향 [60]

2015. 10. 6. 작성된 것으로 “당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작성자는 서울고등법원 소속판사로 추정된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문건의 작성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65]

위 문건은 2016. 7. 18. 경 임종헌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를 담고 있다.

◆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7. 18. 재판) [62]

위 문건은 2016. 7. 19. 이OO 공보관(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서울고법 판사)이 작성한 것으로 이OO 공보관이 직접 법정에서 참석하여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위 공판기일에 참석한 국회의원, 기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특별조사단 조사의 초점은 ‘재판관여 행위’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별조사단은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재판관여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 3. 사법능단의 실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진행상황 [64] 문건 자체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나, 기조실장이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에게 이와 같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원세훈(전 국정원장)사건 개요 [61] 문건에는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재판부는 김용관 사건 담당부. 김용관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한 바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이 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원세훈 재판, 청와대 각본·대법원 연출 법정드라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심 선고 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된 정황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다. 선고 당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장' 아래에는 원 전 원장을 뜻하는 '元-2.6y, 4유, 停3'”라고 쓰여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메모 그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이 메모가 기록된 청와대 비서관 회의는 오전에 열렸고, 선고는 오후 4시께 결과가 나왔다. 이후 9월25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원세훈 판결 세미나→법원 접수기. 고급 협박'이라고 적혀 있다. 민정수석실이 1심 결과를 분석해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영향을 끼치라는 지시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에 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및 출신 고등학교가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나꼼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본 문건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인



정OO 심의관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여 무엇에 대응하려고 한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위 문건은 BH, 여권, 야권,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최근 정세를 마치 정보기관인 양 정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 문건 중 2페이지 내용을 보면,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이 환영, 안도라고 하면서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를 작성한 정OO 심의관이 위와 같은 후문을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추적하여, 구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중 누가 사법부 소속의 어떤 인물에게 감사의사를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감사의사 전달이 단지 1심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 또는 항소인용으로 날 경우에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며 “다만, 김OO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데에는 상당히 조심, 자제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기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건의 작성자는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김OO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관들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김OO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 내부의 불만 표출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무엇보다 위 문건은 항소기각 판결시 사법부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 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

심의원)은 당분간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 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기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한 부분은 법관 인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법원장을 통하여 사법부 내의 법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과기 공선법 유죄판결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향은 BH, 여권 대응이 중심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BH 및 여권에 대하여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한 부분 또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연 사법부와 BH·여권과의 사이에 어떠한 신뢰 관계가 있었고,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1.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항소심 재판의 결과와 상고법원의 추진을 연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와도 연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고 하면서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3.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라고 기재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BH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 진행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표출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해당한다.

급기야 위 문건의 “4.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설득 절차를 거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법부의 비공식라인이 BH와 닿아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진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의를 BH가 곡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사법부는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진의’라는 표현은 아래 59번 문건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 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논의로 국면, 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이라는 제목 하에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BH 입맛에 맞는 사법제도를 제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362] 문건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판단이 갈렸던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문건은 2015. 2. 10.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었다. 대법원은 이 보고서를 적극 수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5개월 뒤인 2015. 7. 16. 선고에서 2심에서 인정된 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

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부분을 파기하였다. 보통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연구관이 법리를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검토보고서를 적극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이 문건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문건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와대의 우려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대법원 재판부에게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실제 판결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들어간 보고서가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의 재판관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행정처가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것이다. 법무비서관실의 누구와 사법부의 누가 서로 재판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행정처가 왜 불안해한 것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이라는 기재 부분도 있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민정라인 사이에 원세훈 재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결하다. 또한 판결 선고 후 동향 분석 관련 부분에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부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를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이라는 문구에 포함된 “진의”란 “원세훈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이기를 바란 법원행정처의 의도”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이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위해서는 위 문건과 관련된 정OO 심의관, 임종헌 기조실장, 청와대 광OO 법무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등의 연결성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 [60]** 문건은 작성자가 원세훈 사건 과거 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통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누군가 엿듣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반대로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거점법관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리방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이라면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통하여 재판에 관여하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sup>2)</sup>.

---

2) 당시 재판장(김시철 부장판사)의 성향과 재판진행 태도(참고 : 시사인 기사, ‘이상한 원세훈 재판, 판사야? 변호사야?’ , 2016.8.4.) 및 문건 내용의 구체성을 고려했을 때, 재판장이 자신과 주심판사의 통화내용을 거점법관에게 의도적으로 들려주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다. 위 문건은 제목을 "당심"이라고 붙였고 재판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재판장은 "기획법관이 궁금해할까봐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획법관이나 재판부가 직접 작성했을 개연성이 제3의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작성했을 가능성보다 높고 이 문건이 행정처 기조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행정처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조사단은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전달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사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문건작성자가 누구인지,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떠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66],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 [62]** 문건들은 위 언급된 문건들에 비하여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으나, 그 작성의도가 의심스럽다.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65]** 문건과 관련하여서도 임종현 기조실장이 직접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단독]박근혜·양승태 핵심 측근 간 '사법농단 직거래' 새 증거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2015년 7월 임종현 법원행정처 기획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추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거래' 의혹의 물적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4. 평가

특별조사단은 주로 원세훈 재판의 진행 과정에 사법행정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관여는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조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강제수사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발견된 문건 그 자체의 존재,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특히 앞서 본 58번, 362번, 59번, 그리고 60번 문건에는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다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대상이 된다) 실제로 재판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다소 불명확하나, 본 문건들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BH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해야 하므로 판결이나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 ◇ 2013년

- ▶ 4. 1.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고발
- ▶ 4. 18. 수사경찰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 구성
- ▶ 4. 29. 원세훈 전 원장 1차 소환조사
- ▶ 4. 30. 검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 ▶ 5. 22.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9명 국정원법 및 공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 ▶ 6. 14.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원장(공선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불구속기소
- ▶ 8. 26. 원세훈 전 원장 첫 공판
- ▶ 11. 20. 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트위터 글 121만228건(선거 관련 64만7443건, 정치 관련 56만2785건)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
- ▶ 11. 28.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 ◇ 2014년

- ▶ 7. 14. 검찰,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 ▶ 9. 11.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선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 "국정원법 위반 인정, 공선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 안 된다"
  -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



- ▶ 9. 12. 김동진 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 ▶ 9. 15.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 ▶ 9. 17.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열고 1심 판결 항소 결정, 법원에 항소장 제출
- ▶ 9. 26.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 ▶ 11. 7. 서울고법,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 11. 14.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첫 공판
- ▶ 12. 3.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 ▶ 12. 29. 검찰,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구형.

◇ 2015년

- ▶ 2. 9.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3명, 공선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 "국정원법 위반 및 공선법상 선거 개입 모두 유죄 인정"
  - 원세훈 전 원장 법정구속,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 2. 10. 대법원 법원행정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작성('사법 블랙리스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공개 내용)
- ▶ 2. 12.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 상고
- ▶ 2. 13. 검찰, 대법원 상고
- ▶ 2. 24. 대법원 3부에 배당
- ▶ 3. 16.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신청
- ▶ 4. 6. 대법원,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 갱신
- ▶ 4. 10. '대선 개입 사건' 주심에 민일영 대법관
- ▶ 6. 3. 대법원,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 갱신
- ▶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 판결 파기환송

▶ 10. 6. 법원, 원세훈 전 원장 보석 신청 허가

◇ 2017년

▶ 2. 1. 법원정기 인사로 파기환송심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로 교체

▶ 7. 10

-세계일보, 국정원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후 'SNS 장악 보고서' 의혹 폭로

-법원, 검찰 측 'SNS 장악 보고서' 증거 신청 기각. 결심공판 연기

▶ 7. 24. 검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서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구형

▶ 8. 24. 검찰,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재개 신청

▶ 8. 28. 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공판 변론재개 신청 불허 결정

▶ 8. 30.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법원, 원 전 원장 '국가정보원법·공선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

▶ 9. 1. 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 재상고

▶ 9. 4. 검찰, 대법원 재상고

▶ 9. 12. 대법원 3부에 배당

▶ 11. 6. 재상고심 주심에 김재형 대법관

◇ 2018년

▶ 1. 19.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모씨 검찰 소환조사

▶ 1. 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 동향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

▶ 1. 23. 現대법관 13명 "청와대 교감설 사실무근" 입장발표